2021 지역형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안내서

< 2021 지역형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은? (요약)>

○ **(지역형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역 스스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목표와 비전**을 세우고, **지역 중심의 생활문화 활동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 **(생활문화 활성화란?)** 다양한 생활문화 주체가 직접 참여하여, 논의하고 실행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지역의 문화자치력을 증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주체의 관계망이 형성되어 있는 건강한 생활문화생태계를 지향함**

○ **(생활문화생태계란?)** 생활문화 **주체, 활동, 공간을 발굴**하고, 서로 연계하고 협력 활동을 통해, 지역의 인적, 물적(시설, 예산 등) 자원과 민·관의 관계망이 촘촘히 연결되고 확장되어 **지역의 이슈 해결 및 지역의 문화정체성을 형성해가는 자생적 플랫폼임**

○ **(목적)** ▲ **지역 중심의 생활문화 활성화** ▲ **연계·협력을 통한 건강한 생활문화생태계 조성** ▲ 문화 향유를 넘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생활문화 플랫폼 구축** ▲ 지역의 문화역량 축적을 통한 **지역문화정체성 형성 및 문화자치 기반 마련**을 그 목적으로 함

○ **(주요활동)** 지역 내 **생활문화 주체의 발굴과 확장을 위한 생활문화 활동**과 **생활문화 주체-활동-공간 등 생활문화 자원 간 연계와 협력 활동**을 지원함

○ **(추진방향)** ▲지역은 생활문화동호회, 공동체 등 생활문화 활동에서부터 지역 자율형 생활문화 활동까지 **지역 특성에 따른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 추진 ▲지역이 스스로 설계하고 직접 실행하는 **지역 주도 사업**으로, 지역 **생활문화 주체 간 공동의 이해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협력체계** 마련 ▲ **지역 변화와 혁신 촉진하는 연계·협력 활동** 추진

○ **(기대효과)** 지역 생활문화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의 문화가치를 증폭시키고 지역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견인하길 기대함

1 추진 배경 및 방향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문화자치**와 **지방분권화**에 따라 지역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함께 만들어가는 자생적 생활문화 환경 마련**의 필요성 증대됨

○ 기존 중앙중심의 단위사업별 사업 추진방식에서, 지역의 환경과 지역 주민의 수요(필요)를 고려한 **지역에서 중앙으로의 지역 제안 방식**의 **종합적 생활문화**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음

○ **국민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 확보** 및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문화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차별 없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생활문화'**의 필요성이 **지역 차원에서 확대**되고 있음

○ **문화를** 「문화기본법」 상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만들어 내는 문화**로 인식을 전환하고, 지역 삶의 모습에 따라 **지역이 스스로 생활문화의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생활문화의 새로운 전환을 시도하기 위함**

□ 추진 방향

❖ **지역의 자율성과 다양성에 따른, 우리 지역만의 생활문화 활성화 방향의 모색과 실행**

○ 생활문화동호회, 공동체 등의 생활문화 활동에서부터 다양한 모임, 커뮤니티 등 보다 일상적인 생활문화 활동까지, **지역은 지역 특성에 따른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 추진**

○ 생활문화의 주체 발굴 및 확장적 생활문화 활동의 추진, 지역 생활문화 자원 간 또는 주체 간 연계·협력을 통한 **우리 지역만의 새로운 생활문화를 형성**

○ 지역의 생활문화 활성화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지역의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방향으로 사업 지원**

❖ 지역 생활문화생태계 조성의 기초가 되는, '지역 주도'의 '생활문화 협력기반' 마련

○ 지역이 스스로 설계하고 직접 실행하는 **지역 주도, 지역 제안형 사업**으로, 소수 주체의 참여를 넘어, 실질적인 **지역 생활문화 주체 간 공동의 이해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차원**의 **접근** 필요

○ **지역 생활문화 주체 간 또는 자원 간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 생활문화 생태계 조성의 기초가 되는 지역 내 **생활문화 협력기반 마련**

○ **새로운 주체의 발굴** 및 **주체 간의 다양한 협력 시도**를 통해 지역의 인적, 물적(시설, 예산 등) 자원과 민관의 **관계망이 촘촘히 연결되고 확장**되는 **자생적 협력 플랫폼으로의 확장** 필요

❖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촉진하는, 지역단위 생활문화 활성화 추진

○ 국민 기본권으로의 문화, 사회안전망으로의 문화의 역할이 요구됨에 따라,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촉진하는 지역 차원의 생활문화 활성화 기반 마련** 필요

○ 생활문화 주체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의 이슈를 발굴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등 문화를 통한 지역 변화와 혁신 촉진**



지역 생활문화 진단 +
다양한 생활문화 주체의 연대와 협력을 위한
논의구조 마련

↓

지역의 변화와 문화가치 확산을 위한 활동

↓

생활문화생태계 조성

2 사업개요

□ 사업목적

생활문화생태계 조성을 통한 생활문화 활성화 및 지역발전 기반 마련

목적	① **지역 주도의** 생활문화 환경 **진단**에 따른 지역중심의 생활문화 활성화
	② **연계와 협력**을 통한 건강한 **생활문화 생태계** 조성
	③ 문화 향유를 넘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생활문화 플랫폼** 구축
	④ 지역의 문화역량 축적을 통한 **지역문화정체성 형성** 및 **문화자치 기반** 마련

기대효과	① 지역 내 **생활문화 주체 형성 및 확장**
	② **생활문화자원** 간 **연계 및 협력** 기반 마련
	③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기회 확대
	④ **지역형 생활문화 활성화** 및 **지역 자율 성과목표 실현**

□ 사업개요

○ 사 업 명: 지역형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 사업기간: 2021년 5월~12월(8개월)

○ 사업내용: 지역형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생활문화 주체 발굴·확장 활동 지원, 생활문화 자원 간 연계·협력 활동 지원)

○ 지원규모: **기초지자체 5개 내외 지역 /총 1,236백만원** (1개 지역 당 250백만원 내외)

※ 지원신청 규모 및 예산은 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전국 기초지자체(지역 주관기관/단체)

※ 기초지자체가 지역 주관기관/단체 추천, 지역 주관기관/단체가 사업신청

○ 지원기간: 단년도 지원

○ 지원내용: 지역형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전문가 자문 및 협력워크숍, 성과분석 및 정책 연구

사업내용	세부내용	비고
지역형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 ■ **지역형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5개 내외 지역)** – **생활문화 주체 발굴 및 확장 지원, 생활문화자원 간 연계·협력 활동 지원** ※지역주관기관/단체: 각 실행사업 주체 발굴 및 논의를 통한 사업계획 수립	지역중심 생활문화 활성화 기반마련
전문가 자문단 운영	▶ ■ **전문가 자문단 운영 및 자문 지원** – 자문단 구성(4명): 자역 별 자문위원 2–3개소 내외 담당 – 자문단 역할: 지역 사업계획 컨설팅, 현장 모니터링 및 평가 등 – 사업추진단계별 그룹자문 및 수시자문	역량 강화 지원
협력워크숍	▶ ■ **중앙–지역주관기관/단체 간 협력워크숍 및 성과도출** – 계획–실행–결과 단계별 협력워크숍을 통한 성과도출 기반 마련 – 사업관계자 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킹을 위한 사업공유회 추진	중앙–지역 협력체계 구축
정책방안연구	▶ ■ **사업 성과 도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 사업 사례 및 성과분석 연구 – 사업 참여자 만족도, 성과측정 · 분석, 차년도 개선방안 마련	성과분석 개선방안 도출

□ 사업 추진체계



○ 추진 주체별 역할

구분	주체 구성		기능 및 역할
중앙	문화체육 관광부	지역문화 정책과	• 정책사업에 대한 총괄 관리 및 행정지원 •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기획 · 조정 · 관리
	지역문화 진흥원	생활문화팀	• 사업 총괄 기획 관리/ 공모·선정·지원 •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지원 • 지역참여협의체 협력연수회(워크숍) 운영 • 지역형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성과관리
	전문가 자문단	자문위원	• 사업 지역 사업계획 자문 • 사업 지역별 현장모니터링 및 평가 • 자문단 회의 및 정책 종합자문
지역	지방자치 단체	기초지자체	• 지역형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 지역주관기관/단체 매칭, 지역주관기관/단체 사업운영 관리 • 지역형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및 관리
	지역주관 기관·단체	**추진협의체** (지자체+ 지역주관기관+ 핵심주체)	• 사업 협력체계 구성 - 추진체계 구성 및 협약 체결(지자체-지역주관기관·단체-핵심 주체 간 협력체계 구성) - 지자체 추천 승인 • 지역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 지역 생활문화 환경 및 자원 조사·분석·진단 - 지역형 생활문화 활성화 계획 수립 - 사업신청, 정산, 성과관리 등 행정지원 • 생활문화 주체·활동·공간 간 협력 활동 운영 • 실행주체 간, 참여자 간 네트워크 지원
	사업실행 주체	**핵심주체**	• **주민조직* 및 생활문화 단체·시설·기관 등** * 주민조직은 개별단위 생활문화동호회가 아닌, 마을회 등 생활권 단위 주민모임 • 생활문화 주체 발굴 · 확장을 위한 생활문화 활동 기획 및 운영 • 생활문화자원 연계 · 협력을 위한 생활문화 활동 기획 및 운영
		개별활동주체	• **개별단위의 동호회, 주민모임, 커뮤니티 모임, 네트워크 모임 등** • 사업 기획 및 의견 제안 / 사업 참여(프로그램, 행사, 교육 등) • 주체적·능동적 참여·실행 • 지역을 대표하는 활동 주체로 참여

□ 추진내용

○ **(사업내용)**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지역 생활문화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형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추진

○ **(지원내용)** 지역형 생활문화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 내 생활문화공동체, 동호회, 주민모임, 커뮤니티 모임 등 다양한 생활문화 주체가 참여하는 활동과 생활문화 주체(활동) 간 연계·협력 활동 지원

<table>
<tr><th>지원사업</th><th>지원규모 및 내용</th></tr>
<tr><td>추진내용</td><td>
1) <u>지역 내 생활문화주체 발굴·확장을 위한 생활문화 활동(전체 사업규모의 50% 내외로 구성)</u>
– (생활문화 활동) 생활문화동호회, 생활문화공동체, 지역형 생활문화 자율활동 등 다양한 주체의 생활문화 활동 추진
※ (지역형 생활문화 자율활동) 생활문화동호회, 공동체 외, 지역진단을 통해 도출된 지역 특성에 따른 생활문화 자율활동 추진 가능(단, 자체 지역계획에 따른 연계 필요성과 효과성 제시 필수)
– (생활문화 활동 발굴·확장) 새로운 생활문화주체(활동)의 발굴과 확장에 중점을 둔 활동으로 구성(기존 활동의 확장적 활동도 가능)

2) <u>생활문화 주체, 생활문화 활동, 생활문화 공간 등의 생활문화자원 간 연계·협력 활동(전체 사업규모의 50% 내외로 구성)</u>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우리지역 작은변화형</td><td>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를 위한 실천 지원</td></tr>
<tr><td>우리지역 가치발견형</td><td>우리 지역의 문화가치를
찾아보고, 알아가며, 만드는 활동 지원</td></tr>
</table>
– (공동의 목표 설정) 지역의 생활문화 활성화 및 지역의 변화를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목표 설정에 따른 과제 도출
– (주체–활동–공간 연계) 지역 내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과 주체, 공간들과의 지속 가능한 지역 기반 마련을 위한 연계·협력 활동(협의체 구성, 워크숍, 회의 등)
※ <u>사업참여 핵심주체 간 협력</u>: 공동체-공동체 간, 공동체-동호회-공간 간 등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 간 적극적인 협력 프로그램 필수
※ <u>지역 안 생활문화 활동 주체 간 협력</u>: 공동체, 동호회 등의 각 개별 활동 범위 내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사업 외부 연결 주체와의 연계·협력 지향 (예: 생활문화 공동체 활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이웃마을 주민, 이웃 공동체, 지자체 공무원 등도 포함)
– 협의체 구성 외에도, 지역 다양성과 자율에 따른 다양한 방식의 연계·협력 활동도 권장
</td></tr>
</table>

– **(생활문화 공간)**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문화 공간의 경우, 지역 내 다양한 공공–민간공간 주체와의 협력 활동 거점으로의 역할 중점 지원

※ 생활문화 공간 간, 공간과 생활문화 활동(주체)과의 협력 활동 지원
※ 생활문화 공간은 생활문화센터 등 공공 공간에서부터 민간 생활문화 공간까지 다양한 지역 생활문화 공간을 포함
※ 단, 생활문화센터 참여 시 추가 예산 지원 가능(지역 당 40백만원 이내/1개 센터 당 최대 20백만원 / '20년 12월 기준 개관·운영센터 대상)

<연계·협력 활동 사례>

※ 제시된 사례는 참고사항으로 지역만의 생활문화 활동을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지역 작은 변화형**

–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를 위한 실천 지원** # 동네의 문제를 지역 주민의 힘으로 풀어가려는 활동 등

※ **(사례1)** 우범지대를 살리기 위해 주민들이 집안의 화분을 골목 밖으로 꺼내놓는 작은 움직임으로 시작함. 이후 참여주민이 많아졌고, 골목마다 꽃향기가 번지고 골목가꾸기 활동을 통해 골목정원이 만들어짐. 현재 26개 골목정원이 만들어지고, 주민들이 역사스토리를 담은 골목꾸미기까지 더해지면서 우범지역이 아닌, 주민들이 북적북적한 골목을 조성함.

※ **(사례2)** 상가와 대학생의 1인 가구로 이뤄진 대학가의 골목에서, 1인 가구의 건강문제와 상가 활성화를 위해 식당 가게 주인들이 1인 가구 학생들에게 건강한 밥상레시피를 가르쳐주고,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는 활동으로 서로의 끼니를 돌봐주는 골목문화가 형성됨.

● **우리지역 가치발견형**

– **우리 지역의 문화가치를 찾아보고, 알아가며, 만드는 활동 지원**

지역 주민의 삶, 지역문화자원, 전통 등 지역의 모습을 알아가며, 지역을 문화적으로 재해석하거나 새로운 문화가치를 만들어가는 활동 등

※ **(사례1)** 매년 관주도로 추진됐던 지역 특산물 축제는 주민들보다는 외부 관광객을 위한 축제로 추진되고 있었음. 지역의 옛 놀이인 꽃단치기와 지역에서 살아진 장터를 복원하고, 지역 내에 상인회, 다문화모임, 주민회, 부녀회, 청년회 등이 함께 모여 주민 커뮤니티를 만들어 주민이 즐기는 자생적 지역축제를 지속함.

※ **(사례2)** 지역의 기업직원들과 마을주민 200여명이 참여하여 지역 전통문화인 만선제의 풍물패 공연, 깃발행진 퍼레이드, 만선기원 강강술래, 소원뗏목 바다에 띄우기 등 진행하여 지역 고유의 문화를 복원하고, 마을의 공유문화를 형성함.

(성과관리) 지역형 생활문화 활성화 보고서 제출

– 우리 지역에 맞는 생활문화 정체성을 찾고, **지역의 변화** 및 역량과 관계의 변화된 성과 제시

– **사업 전** 지역의 **자율 성과목표 제시** 및 사업 후 **목표 달성 과정**과 **성과 제시**

– 지원규모(1개 지역): 250백만원 내외

· 지역형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210백만원)+생활문화센터(40백만원)=250백만원

※ 사업운영비(인건비*, 워크숍, 성과공유회, 홍보 등): 총 지원액의 20% 이내 집행 가능

* 인건비(복리후생비 포함) : 사업운영비의 60% 이내 집행 가능

□ 사업 추진방식

○ 지자체가 추천한 지역 주관기관/단체와 **12개 내외**의 **핵심주체**(주민조직* 및 문화단체·시설·기관 등)가 사업 추진

* 주민조직은 개별단위 생활문화동호회가 아닌, 마을회 등 생활권 단위 주민모임

○ 지역 주관기관/단체 → 핵심주체 교부 가능

※ 지역 주관기관/단체는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핵심주체에게 교부 가능, **핵심주체가 주민에게 재교부 불가**

※ **(지자체 직영 생활문화센터)** 지자체로의 직접 교부가 불가능하여 지역주관단체 또는 생활문화 공간 간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할 임의단체(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단체)를 통해 사업 추진 가능

□ 사업계획서 작성내용

○ **사업 추진 목표 및 방향**

– 지역 생활문화 활성화 목표 및 핵심가치

–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 (전략 및 추진방향 / 협력 방안 등)

○ **기본현황분석** : 지역문화 환경 및 특성 분석, 지역주민 의견 수렴 결과 등

○ **사업 운영계획**

– 사업추진체계(인력 구성, 주체 역할, 업무 범위 및 분장, 공간 등)

– 사업 추진협의체(지자체+지역주관기관+핵심주체)
운영계획(협력연수회(워크숍) 및 네트워크 프로그램 계획, 예산계획

– 생활문화 주체 간 협력 계획(지역 생활문화생태계 활동주체)

○ **세부추진계획**

– 생활문화 주체 발굴·확장, 자원 간 연계·협력 생활문화 활동 계획

– 각 사업별 목적, 추진내용, 사업규모, 예산계획, 지역주민 참여 확대방안

○ **기대효과**

– 차년도 지속성을 고려한 생활문화 활성화 방안 등 향후 계획

– 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및 환류 방안

○ **기초지자체의 지역주관단체 추천서**

○ **핵심주체 참여협약서**

3 사업계획 수립

○ **추진과정 및 주요 수행내용**

– 지역 생활문화 환경 및 자원에 대한 조사·분석·진단에 따라 생활문화 주체(공동체, 동호회, 주민모임, 커뮤니티 모임, 공간 등)들의 협력형 활동으로 지역 중심의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

– 지역형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은 생활문화 주체를 발굴·확장하고 활동 간,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활동 또는 지역의 생활문화 가치를 발견하고 확장하는 활동으로 구성

공모 전 추진내용

생활문화 조사 및 진단

생활문화 환경 진단을 통한 **지역 생활문화 이슈, 방향, 과제 도출**

조사 → 분석 → 진단

◆ (조사) 지역 생활문화 환경 및 자원 조사, 주민 등 주요 생활문화 주체 의견수렴
◆ (분석·진단) 지역 생활문화 환경 및 활동유형 등 분석 및 진단
◆ (계획수립) 사업구상 및 추진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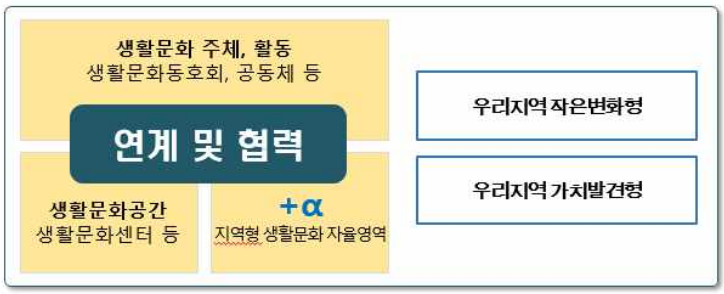
⇓

우리 지역 생활문화 주요 활성화 방향 및 과제 도출

선정 후 추진내용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계획

지역 분석과 진단에 따른 **지역형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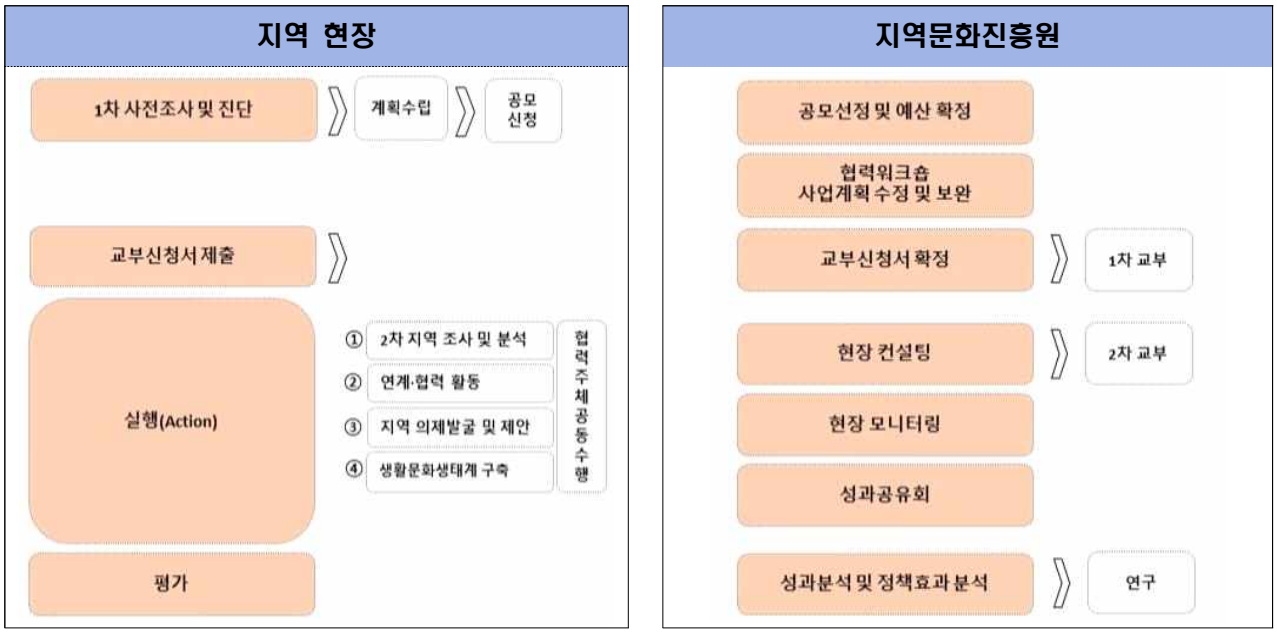
◆ (사업추진) 지역 내 생활문화 주체 발굴·확장 활동, 생활문화자원 간 연계·협력 활동
◆ (성과관리) 지역의 변화과정 및 사업 성과 정리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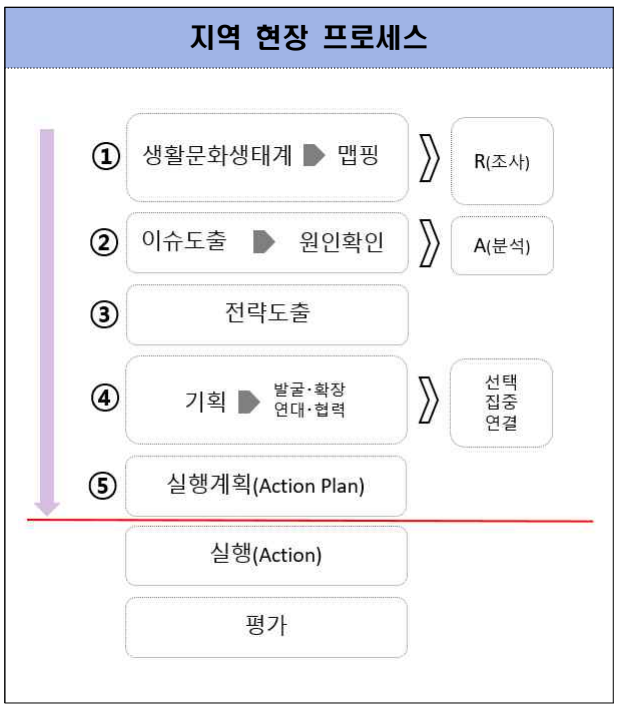
생활문화생태계 조성을 통한 생활문화 활성화 및 지역발전 기반 마련

◆ 지역 내 생활문화 주체 형성 및 확장
◆ 생활문화자원 간 연계 및 협력기반 마련
◆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기회 확대
◆ 지역형 생활문화 활성화 방향 수립

○ 사업추진 프로세스



○ 공모 전 추진내용



추진 내용
지역 현황 및 생활문화 자원 분석 기사, 서적, 영상 등 자료조사 및 **인터뷰** 등 · 일반현황 조사 및 분석 · 활동현황 조사 및 분석(시설 및 마을 별 프로그램) · 인적자원 조사 및 분석(활동가, 강사, 예술가, 등) · 공간자원 조사 및 분석(생활문화 시설 등) · 생활문화 주체 의견 수렴
지역 진단 및 전략 도출 · 지역 특성 및 이슈 분석 > 진단 ·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전략 도출
사업공론화 및 협력단체 구성 · 사업 공론화를 통한 협력단체 모집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구성 · 지역진단에 따른 사업 구성 및 협력 기획
실행 계획 수립

○ 공모 전 세부추진내용

(1) 지역 현황 및 생활문화 자원 분석

- 지역 생활문화 환경 및 자원조사(조례, 시설, 인력, 활동, 프로그램 등)와 특성 분석
-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인식 및 개념 조사
- 지역주민, 동호회 등 사업 참여 당사자 의견 수렴
- 지역 및 참여자 분석을 통한 본 사업의 필요성 검토

(2) 지역진단 및 전략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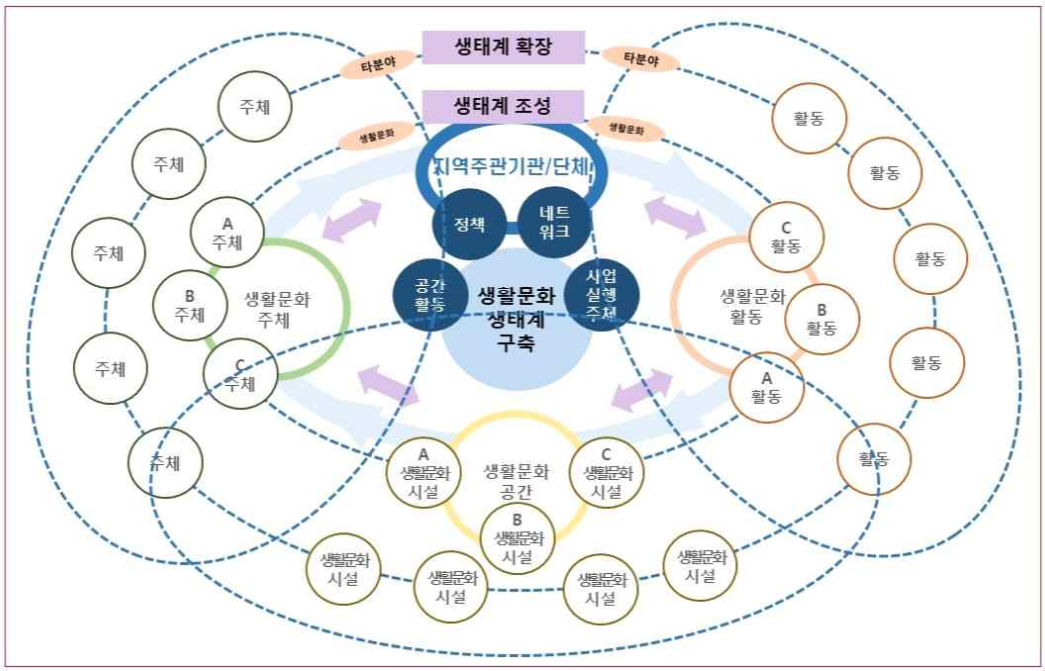
- 지역의 특성 및 생활문화 환경분석을 통한 지역의 생활문화생태계 진단
- 지역의 상황과 활동 단계에 따라 지역별 사업 추진 방향 및 성과목표 설정
- 생활문화 자원 발굴 및 확대를 위한 지역별 생활문화 활성화 전략 도출

<지역진단에 따른 추진 방향>

생활문화 현황 **조사** > 생활문화생태계 **진단** > 지역형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시행

생활문화협의 구조가 없고, 주체 간 연대와 협력 경험이 필요한 지역	기존교류단체간생활문화협의구조가존재하며, 지역의 생활문화 생태계를 위한 고민과 논의의 경험이 있는 지역	지역내생활문화주체,활동,공간간 협의구조가존재하며, 생활문화발전을위한논의가진행중인지역
생활문화생태계 조성	**생활문화생태계 확장**	**생활문화생태계 자생**
. 지역 조사 및 분석 . 소통의 장 및 의견 합의 과정 마련 . 사업 참여자 간 연대, 협력 경험 . 생활문화협의회 구성(참여주체 간)	. 생활문화협의체 정례화 . 사람·활동·공간 새로운 주체 발굴 . 사업의 다양화 및 주체 확장 . 문화를 통한 사회혁신 시도 . 생활문화협의회 구성(생활문화 주체 간)	.생활문화협의회 안정 및 체계화 . 지역 생활문화 정책 제안(법/제도) . 자생 및 활성화 방안 모색
생활문화 주체 간 협력 구조 마련	**생활문화 주체 발굴 및 확장**	**생활문화생태계 활성화**

<생활문화 자원 간 확장 방향>



(3) 사업 공론화 및 협력체계 구성

-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 내 생활문화 주체의 정보 교류 및 의견 수렴
- 생활문화 주체, 활동, 공간 등과 충분한 상호 협의 및 논의를 통한 사업 협력구조 구성
- 지역주관기관/핵심주체 : 참여 핵심주체 간 협력체계 구성(**역할 및 협력사항** 등)

(4) 지역의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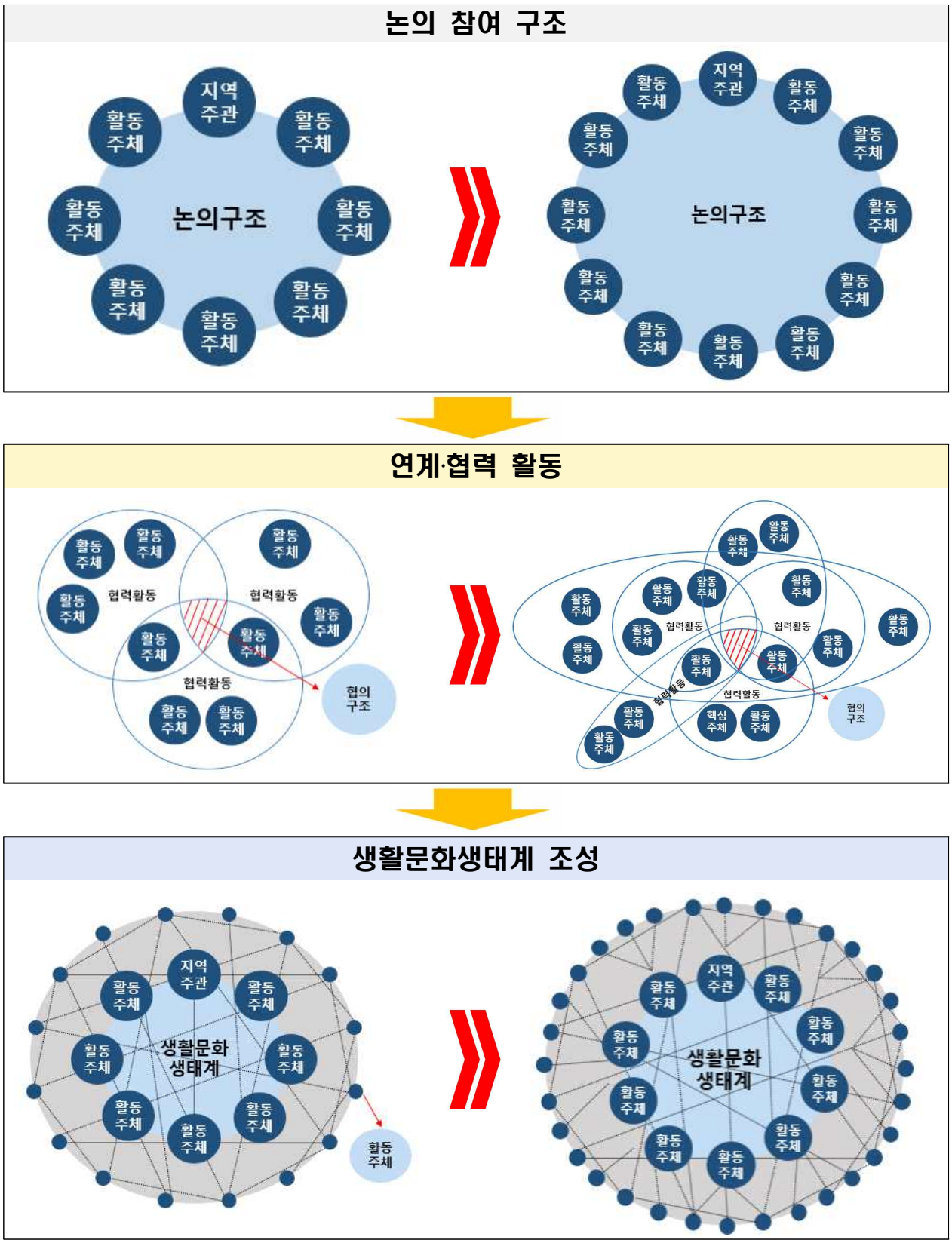
- 지역주관단체와 핵심주체 간 협력 사업계획 수립 과정 설계
- 생활문화 주체를 발굴·확장하고, 생활문화 자원 간 연계와 협력 활동으로 설계
- 연계와 협력은 워크숍, 회의 등을 넘어,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융합형 생활문화 활동으로 추진
  · 공동의 목표는 지역의 이슈·현안을 해결하거나 실천하는 활동, 지역의 문화정체성 확보(주민 생활 실험실, 생활문화 개념 논의 등)를 위한 구체적 설정

(5) 실행 계획 수립

- 지역형 생활문화 활성화 계획 수립(지역의 생활문화 비전 및 목적, 추진방향, 추진내용, 예산계획, 지역 주민의 주체적 참여방안 등)
- 개별사업의 종합적 추진이 아닌, 활동 간의 융합적 연계 및 협력 활동

5 참고자료

<생활문화생태계 조성 과정 및 방향>



□ 사업 키워드

○ **(삶의 문화)**

– 생활문화란,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등을 포함하는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을 총체로 정의함. 예술의 장르형 문화예술을 벗어나, 삶의 방식과 태도를 만들어 내는 관계의 문화로 이해하고 생활문화를 이루는 주체 간의 관계망 형성을 위한 활동으로 구성

○ **(주민주도)**

– 사업계획은 지역주관단체 또는 소수에 의한 계획이 아닌, 공론화를 통한 지역의 다양한 주민들과의 논의와 협의를 통해 수립

– 단순 기량 습득 및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단순 발표 전시를 위한 일회성 프로그램을 지양하며, 향유를 넘어 지역 변화를 위한 주체적 활동 구성

○ **(지역 생활문화 활성화 및 지역발전 추구)**

– 개별 생활문화 주체의 활동 결합이 아닌, 지역의 종합적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 목표 및 방향을 구체적으로 수립

– 문화를 누리는 향유 방식에서 벗어나,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모색하고, 지역사회의 변화와 혁신의 활동 지원

○ **(연계와 협력)**

– 주체별 단위사업의 종합 추진이 아닌, 지역의 생활문화 활성화 계획에 따라 각 주체와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활동의 협력전략을 수립하는 지역의 융합적 활동 지원

– 생활문화 추진 주체와 공간의 활동이 분리되지 않고, 활동 간 결합구조로 기획

– 생활문화 주체 간 협력 활동을 통해 서로 연계하고, 관계망이 형성되도록 운영

붙임1 보조금 예산 편성 지침

□ 예산편성 기본 원칙

기본원칙	세부 내용
당해 연도 내 사업집행 완료	- 보조사업은 당해 연도 안에 추진이 완료되어야 함 - 지원금은 2021년 12월 31일(금) 내 집행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지원금 교부 이전 사업집행내역 불인정	- 보조사업자는 지원금 교부 이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 해당 집행 내역을 지원금 사용 내역에 계상할 수 없음 ※ 불가피한 사유로 우리 원에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함 -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으며,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용역.하도급 집행 금지	-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상당 부분을 용역 또는 하도급 비용으로 집행할 수 없음. 연구용역 불가
집행기준 및 방법 준수	-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며, 지원금 사용 규모는 본 <지원금 관리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책정해야 함
사업과 직접 관련 경비만 사용 가능	-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아래 <지원금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비>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금으로 편성하거나 집행할 수 없음

□ 지원금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비

인정불가 경비	세부 내용
보조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 대표 및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집기 구매, 전기·수도 공과금, 전화 요금 등 단체 운영 경비
단체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 자산 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개·보수비), 전화(인터넷) 설비 등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사업 관련 경비	- 상금 및 상품권, 경품, 상품 등 시혜성 물품 구매, 현물 집행 - 상금이나 경품을 주는 경연 행사 심사비 등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액을 공제/환급받는 일반 과세사업자는 지원금으로 부가가치세 사용 불가 - 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보조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등 미공제/미환급 받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후 편성 가능하며, 다음 해에 해당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 관련 증명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기타 사항	-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 지원금 전용 카드 사용 제한 업종

□ 예산편성 항목 및 기준

○ 예산항목 및 내용

보조비목	보조세목	항목 및 내용
인건비(110)	일용임금(04)	사업 운영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초단기인력활용비(보조인력활용비), 전문가 활용비, 홍보비, 구입비, 제작비, 회계검사수수료, 기타 사업 운영을 위한 제반비용
	임차료(07)	장비 등 각종 임차료, 화상회의 시스템 이용료 등
	복리후생비(12)	통합사업 운영관리 기간제 근로자 4대보험료 회사부담금
여비(220)	국내여비(01)	사업 운영에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를 위한 관내·관외출장비
업무추진비(240)	사업추진비(01)	다과비, 간담회비 등
민간이전(320)	민간경상보조(01)	단위사업별 추진주체에 지원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편성

○ 예산편성 기준

※ 아래에 제시된 비목/세목 외 타 비목/세목 편성 불가
※ 부가가치세를 사후 공제·환급받는 단체의 경우 부가세를 제외하고 예산 편성
※ 아래 제시된 기준 금액은 참고 자료이며, 사례별로 현실을 반영하여 적용
※ 인건비성 경비는 상황에 따라 아래의 기준보다 하향 지급은 가능하나 상향 지급 불가
※ 아래에 제시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주관단체별로 적절한 기준 근거를 제시하고 편성

보조비목	보조세목	항목 및 내용	비고
인건비(110)	일용임금(04)	**○ 사업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 사업 운영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 인원에 상관없이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여 사업운영비*의 60% 편성 * [사업운영비]는 인건비를 포함한 워크숍, 성과공유회, 홍보 등의 전체 사업운영을 위한 공통운영비를 말함 ※ 생활문화 활동 보조인력활용비는 인건비로 편성하지 않음	
		○ 보조인력(초단시간 근로자) 활용비 –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시간 단위 또는 일 단위로 고용한 인력 활용비 – 1인 1시간당 8,720원 – 단, 1인 당 최대 주15시간(1개월 60시간) 미만 준수 ※ 단체 내부인력(대표 및 상근직원)에 지급 불가 ※ 동일 인물에게 전문가 사례비 지급 불가	

<table>
<tr><th>보조
비목</th><th>보조
세목</th><th>항목 및 내용</th><th>비고</th></tr>
<tr><td>운영비
(210)</td><td>일반
수용비
(01)</td><td>
○ 전문가 활용비
– 강사 사례비
<table>
<tr><th>구분</th><th>기준</th><th>사례비(한도)
(1회 2시간 기준)</th></tr>
<tr><td>A급</td><td>· 전/현직 장/차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학장급
· 정부 출연기관 선임연구원 이상
· 일간지 및 방송국의 논설의원, 국장급 이상
· 전문직 종사자로 경력 및 지명도가 A급 예우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 회계사, 의사, 작가, 예술인, 연예인 등)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td><td>300,000원</td></tr>
<tr><td>B급</td><td>· 4년제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기능대) 조교수 이상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정부 출연기관(연구기관) 및 문화예술계 사단/재단법인 재직자
· 개인기관의 장(원장, 소장)
· 정부 중앙부처의 사무관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국장급 이상
· 전문직 종사자 중 A급 강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문화예술계 근무 5년 이상의 초청강사</td><td>200,000원</td></tr>
<tr><td>C급</td><td>· A, B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강사급</td><td>100,000원</td></tr>
</table>
※ 1시간 당 A/B급 10만원, C급 5만원 추가 지급 가능
※ 위 사례비에는 여비 등의 부대경비가 포함된 금액임. 단, 참석자의 거주지와 회의장소가 관내의 범위를 넘을 경우 교통비 별도 지급 가능(대중교통 일반실 기준, 자차이용 시 유류비는 관외여비 지급기준 준용)
– 토론회, 포럼 등 학술행사 사례비(발표자, 사회자, 토론자)
<table>
<tr><th>구분</th><th>기준</th><th>사례비(한도)
(1회 3시간 기준)</th></tr>
<tr><td rowspan="2">발표자</td><td>A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td><td>400,000원</td></tr>
<tr><td>B급/C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td><td>300,000원</td></tr>
<tr><td rowspan="2">사회자</td><td>A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td><td>300,000원</td></tr>
<tr><td>B급/C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td><td>200,000원</td></tr>
<tr><td rowspan="2">토론자</td><td>A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td><td>200,000원</td></tr>
<tr><td>B급/C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td><td>150,000원</td></tr>
</table>
※ 위 사례비에는 여비 등의 부대경비가 포함된 금액임. 단, 참석자의 거주지와 회의장소가 관내의 범위를 넘을 경우 교통비 별도 지급 가능(대중교통 일반실 기준, 자차이용 시 유류비는 관외여비 지급기준 준용)
– 회의 참석 사례비
<table>
<tr><th>구분</th><th>기준</th><th>사례비(한도)
(1회 2시간 기준)</th></tr>
<tr><td>회의참석
수당</td><td>· 자문회의, 좌담회 등</td><td>150,000원</td></tr>
</table>
※ 2시간 초과 시 초과회의비(5만 원) 지급 (1일 총 20만 원)
※ 위 사례비에는 여비 등의 부대경비가 포함된 금액임. 단, 참석자의 거주지와 회의장소가 관내의 범위를 넘을 경우 교통비 별도 지급 가능(대중교통 일반실 기준, 자차이용 시 유류비는 관외여비 지급기준 준용)
※ 사업에 참여하는 생활문화인 및 동호회 등에 사례 불가
</td><td></td></tr>
</table>

<table>
<tr><th>보조
비목</th><th>보조
세목</th><th>항목 및 내용</th><th>비고</th></tr>
<tr><td rowspan="2">운영비
(210)</td><td rowspan="2"></td><td>
– 행사 진행 사례비(사회자 사례비)
<table>
<tr><th>구분</th><th>기준</th><th>사례비(한도)
(1회 3시간 기준)</th></tr>
<tr><td rowspan="3">행사
사례비</td><td>A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td><td>300,000원</td></tr>
<tr><td>B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td><td>200,000원</td></tr>
<tr><td>C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td><td>100,000원</td></tr>
</table>
※ 위 사례비에는 여비 등의 부대경비가 포함된 금액임. 교통비 및 부대경비 측정 불가

– 컨설팅 사례비
<table>
<tr><th>구분</th><th>기준</th><th>사례비(한도)
(1회 2시간 기준)</th></tr>
<tr><td rowspan="3">컨설팅
사례비</td><td>A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td><td>300,000원</td></tr>
<tr><td>B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td><td>200,000원</td></tr>
<tr><td>C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td><td>100,000원</td></tr>
</table>
※ 최대 4시간(1시간 당 A/B급 10만원, C급 5만원 추가 지급 가능)
※ 위 사례비에는 여비 등의 부대경비가 포함된 금액임. 단, 참석자의 거주지와 회의장소가 관내의 범위를 넘을 경우 교통비 별도 지급 가능(대중교통 일반실 기준, 자차이용 시 유류비는 관외여비 지급기준 준용)

– 원고료
<table>
<tr><th>기준 1(원고 집필인)</th><th>기준 2(원고 내용)</th><th>사례비(한도)</th></tr>
<tr><td>· 전문 작가
· 해당분야 전문가
· 특강 강사 사례비 지급 기준 A급</td><td>· 고급원고
(연재물, 전문가 지식 수록, 전문가 칼럼 독창적인 내용의 우수한 원고)</td><td>200자 원고지 1장 당 20,000원</td></tr>
<tr><td>· 해당 분야 유경험자
· 전문작가 수준의 필자</td><td>· 일반원고
(작성 난이도가 중간 정도인 원고)</td><td>200자 원고지 1장 당 15,000원</td></tr>
<tr><td>· 일반인, 독자 외</td><td>· 자료원고
(자료를 발췌· 참고· 인용 및 재가공하여 작성한 원고)</td><td>200자 원고지 1장 당 5,000원</td></tr>
</table>
※ 위 2개 기준 중 1개 기준 적용
</td><td></td></tr>
<tr><td>
ㅇ 사업기록비
– 사진, 영상기록비 등
</td><td></td></tr>
<tr><td>
ㅇ 홍보물 제작비
– 현수막, 배너, 브로슈어 등
※ 기념품, 판촉물 등은 금액에 관계없이 편성 및 집행 불가
</td><td></td></tr>
<tr><td>
ㅇ 소모성 물품 구입비
– 당해연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방역을 위한 소모품 등
※ 비소모성 물품 구입비 편성 불가
</td><td></td></tr>
<tr><td>ㅇ 회계검증수수료</td><td>필수 편성</td></tr>
<tr><td>ㅇ 예술인고용보험료(사업자부담금)</td><td></td></tr>
<tr><td>
ㅇ 기타 사업 운영을 위한 제반 비용
※ 단, 사업 참여자(동호회, 주민 등)의 행사 답사, 견학 등을 위한 입장료,
</td><td></td></tr>
</table>

<table>
<tr><th>보조
비목</th><th>보조
세목</th><th>항목 및 내용</th><th>비고</th></tr>
<tr><td></td><td></td><td>관람료 편성 불가</td><td></td></tr>
<tr><td></td><td>임차료
(07)</td><td>○ 워크숍, 발표회 등 행사 운영을 위한 장소 임차료(단기성)
○ 음향, 조명, 전기 등 시스템, 화상회의 시스템 및 차량 임차료 등
※ 단체 소유의 기자재 및 소품 임차료 편성 불가</td><td></td></tr>
<tr><td>여비
(220)</td><td>국내
여비
(01)</td><td>○ 사업 관련 출장경비
<table>
<tr><th>구분</th><th>내역</th><th>지급방법</th><th>지급액(한도)</th></tr>
<tr><td>관내</td><td>일비</td><td>정액</td><td>- 4시간 미만 : 10,000원/1일
- 4시간 이상 : 20,000원/1일</td></tr>
<tr><td rowspan="4">관외</td><td>교통비</td><td>실비</td><td>- 대중교통비(고속버스, KTX 등) 지급
· 일반실 기준(프리미엄 또는 특실 이용 불가)
- 부득이 개인차량 이용 시 연료비, 통행료 지급
· 연료비 산출방법: 여행거리(km)×유가÷연비</td></tr>
<tr><td>숙박비</td><td>실비
(1박당)</td><td>- 서울특별시 : 70,000원/1박
- 광역시 : 60,000원/1박
- 그 외 : 50,000원/1박</td></tr>
<tr><td>식비</td><td>정액</td><td>- 20,000원/1일</td></tr>
<tr><td>일비</td><td>정액</td><td>- 20,000원/1일</td></tr>
</table>
※ 여비는 본 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에게만 지급 가능(전문가를 활용하여 교통비를 지원할 경우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준용하되, 일반수용비에서 편성 및 집행)
※ 관외출장 시 식사를 대접받거나 다른 예산과목을 통해 식비 지출이 이루어진 경우 식비 지급 시 그 금액을 제외(1식 6,600원)
- 관내 기준: 단체 사무실 기준으로 왕복 2km 이상 12km 미만 거리의 출장
※ 관내여비는 정액 지급하므로, 별도의 주유비 또는 택시비 지급 불가)
※ 관외 또는 관내 출장 시, 일비를 지급하므로 택시비 편성 및 집행 불가
※ 관내여비 지급 한도는 1인 1개월 기준 5만 원 이내(초과 시 자부담)
○ 우리 원 주관 성과공유회 참석을 위한 여비(최대 2인 편성 가능)</td><td></td></tr>
<tr><td>업무
추진비
(240)</td><td>사업
추진비
(01)</td><td>○ 회의 및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다과비 및 간담회비(식대)
– 다과비 기준단가: 5,000원/1인 1일 기준
– 식대 기준단가: 10,000원/1인 1일 기준
※ 1인 1일 최대 15,000원</td><td></td></tr>
<tr><td>민간
이전
(320)</td><td>민간
경상
보조
(01)</td><td>○ 사업별 핵심주체 사업비
※ 이나라도움을 통한 교부 및 정산 필수</td><td></td></tr>
</table>

붙임2 생활문화센터 개관 목록(2021년 1월 개관기준)

구분	시도	시군구	센터명	운영방식	개관연도
1	서울 (5)	은평구	은평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7
2		금천구	가산 생활문화센터	직영/주민자율	2017
3		종로구	체부동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8
4		서대문구	독립문 생활문화센터	직영	2020
5		광진구	광진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20
6	부산 (18)	사하구	두송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5
7		부산진구	양정1동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6
8		중구	40계단문화관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6
9		동구	범일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6
10		수영구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6
11		동구	좌천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7
12		서구	충무동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7
13		부산진구	전포생활문화센터	직영	2017
14		서구	동대신3동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7
15		북구	금곡동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7
16		사상구	감전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8
17		영도구	깡깡이 생활문화센터	주민자율	2018
18		동구	초량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8
19		중구	부산 생활문화센터(한성1918)	민간위탁	2018
20		수영구	구락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9
21		동구	수정 생활문화센터	직영	2020
22		동구	매축지 생활문화센터	직영	2020
23		금정구	섯골마실 생활문화센터	직영	2020
24	대구 (8)	남구	대덕문화전당 대덕생활문화센터	직영	2015
25		북구	행복북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5
26		달서구	달서 생활문화센터 장기점	민간위탁	2016
27		달서구	달서 생활문화센터 송현점	민간위탁	2016
28		달성군	서재 행복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6
29		남구	대명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7
30		서구	비산5동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7
31		동구	아양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20
32	인천 (10)	미추홀구	학산 생활문화센터 마당	민간위탁	2016
33		중구	인천 생활문화센터 칠통마당	민간위탁	2016
34		동구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6
35		부평구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168	민간위탁	2017
36		중구	개항장 문화마당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7
37		연수구	진달래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7
38		옹진군	자월면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8
39		옹진군	북도면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8
40		계양구	계양 생활문화센터	직영	2020
41		연수구	507 문화벙커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20
42	광주 (8)	서구	농성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5
43		광산구	광산문화원 광산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6
44		서구	광주 서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6
45		남구	남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7
46		서구	치평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8
47		서구	서창 생활문화센터	주민자율	2019
48		북구	북구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9

49		동구	전일 생활문화센터	직영	2020
50	대전 (4)	서구	둔산1동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5
51		서구	대전시립미술관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7
52		중구	한밭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8
53		동구	동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20
54	울산 (3)	울주군	울주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6
55		중구	중구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6
56		북구	울산북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9
57	세종 (2)	본청	조치원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6
58		세종시	부강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8
59	경기 (15)	동두천시	동두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5
60		고양시	아람마당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5
61		고양시	호수마당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5
62		수원시	수원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5
63		양주시	777 생활문화센터	직영/주민자율	2015
64		수원시	지동 창룡마을 창작센터	직영	2015
65		수원시	경기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6
66		용인시	보정역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6
67		화성시	화성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7
68		성남시	서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7
69		부천시	오정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7
70		부천시	소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7
71		평택시	현덕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8
72		김포시	월곶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8
73		군포시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9
74		하남시	생활문화센터 하다	직영	2020
75	강원 (13)	화천군	화천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6
76		양구군	동면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6
77		동해시	동해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6
78		영월군	한반도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6
79		강릉시	임당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6
80		원주시	원주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6
81		영월군	덕포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7
82		춘천시	아르숲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8
83		평창군	달빛 생활문화센터	주민자율	2018
84		철원군	화강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9
85		원주시	판부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9
86		양구군	남면 생활문화센터	직영	2020
87		양구군	방산면 생활문화센터	직영/주민자율	2020
88	충북 (3)	괴산군	괴산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5
89		충주시	충주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6
90		청주시	청주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7
91	충남 (9)	서산시	서산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4
92		아산시	온양문화원 온양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5
93		금산군	금산 어깨동무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5
94		보령시	웅천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6
95		부여군	부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6
96		아산시	배방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8
97		태안군	태안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8
98		당진시	당진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8
99		서천군	기벌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21
100	전북 (14)	전주시	삼천생활문화센터	직영	2015
101		전주시	진북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5

102		전주시	효자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5
103		전주시	인후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5
104		장수군	장수한누리전당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5
105		전주시	우아생활문화센터	직영	2016
106		완주군	구이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6
107		김제시	김제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6
108		고창군	고창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7
109		진안군	진안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7
110		완주군	동상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7
111		완주군	삼례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7
112		정읍시	정읍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7
113		부안군	부안 생활문화센터	직영	2020
114	전남 (11)	여수시	여수 예술인촌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5
115		해남군	문내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5
116		화순군	화순군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6
117		화순군	화순읍 생활문화센터	주민자율	2016
118		보성군	겸백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7
119		해남군	계곡 생활문화센터	주민자율	2018
120		장흥군	천관문학관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8
121		보성군	조성면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8
122		광양시	광양시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8
123		순천시	순천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	민간위탁	2018
124		해남군	해남군 생활문화센터	직영	2020
125	경북 (8)	성주군	성주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5
126		영덕군	영덕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5
127		상주시	상주 생활문화센터	주민자율	2015
128		영덕군	예주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7
129		포항시	구룡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7
130		군위군	군위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8
131		영천시	영천문화원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8
132		경산시	경산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9
133	경남 (11)	거창군	하성 단노을 생활문화센터	주민자율	2015
134		밀양시	백산마을 생활문화센터	주민자율	2016
135		밀양시	신안마을 생활문화센터	주민자율	2016
136		남해군	남해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7
137		산청군	덕산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7
138		밀양시	기산리 생활문화센터	주민자율	2017
139		하동군	악양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8
140		창원시	중앙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8
141		창원시	성호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20
142		김해시	무척사랑 생활문화센터	주민자율	2020
143		김해시	다어울림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20
144	제주 (6)	제주시	영평하동 알무드내 생활문화센터	주민자율	2017
145		제주시	내도동 생활문화센터	주민자율	2017
146		제주시	종달리 생활문화센터	주민자율	2017
147		제주시	우도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8
148		제주시	해안동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9
149		제주시	사평마을 생활문화센터	주민자율	2020